

ISP처벌의 범위와 올바른 인터넷 문화에 대한 연구*

-사이버 저작권과 영파라치 신고 제도를 중심으로-

이효민

21세기에 들어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존재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사이버 공간의 확대는 편리함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무분별한 정보의 공유로 인한 역기능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우리경찰은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이버상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 없는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방대한 불법적인 정보의 감시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공간내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고 이후 범죄가 발생되면 처벌하려고 하는 사이버상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처벌하지 않고 단지 업로더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며, 국가기관에서 운영되는 사이버 경찰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민간 기업이 업로더들을 적발, 합의하는 등 일련의 법집행 과정을 의도함으로써 일어나는 인터넷 문화의 정착에 대하여 알아보며, 사이버 경찰이 네티즌을 활용한 이러한 제도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주제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사이버범죄, 영파라치, 저작권

1. 서론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존재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정보시대가 도래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게 해준 인터넷은 세계의 각 나라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개개의 가정까지 옆집의 이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된지 오래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나 인터넷의 정보의 공유로 인한 역기능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검증되지 않은 오정보들과 음란물이 넘쳐나고 있으며 요즘 들어 심각하게 대두되는 인터넷을 통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¹⁾

* 본 논문은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안티 사이트 등의 출현은 기업의 제품의 불만이나 사용의 불편사항을 게재함으로써 불매운동 등을 유도하는 역기능과 제품의 불완전함을 개선하는 순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이유 없는 개인의 감정적 불만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경찰은 1995년 10월부터 경찰청 내 해커수사대를 시초로 사이버 공간을 위한 제도를 창설한 이래 2000년 7월 현재 체제인 사이버 테러대응센터를 창설하여 갖가지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이버상의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 없는 사이버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 하고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불법적 정보들의 감시가 사실상 어려워, 정보의 공유라는 방패 아래 콘텐츠 개발자, 인터넷에 대한 저작권관련 개발 기업, 또는 저작자는 무단 배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국가기관만을 의지 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고 예전 직접 저작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여 고소·고발하였으나 P2P 등을 서비스하는 서버의 증가에 따라 현재는 기업형으로 갖가지 포상금을 걸고 신고를 접수 받는 형태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한 시발점은 소리바다의 법적인 음원 사건이었으며, 이러한 체제의 최종적인 형태는 영파라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파라치, 즉 저작권을 내용으로 한 업로더들의 고소·고발은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변호사 사무실)에서 영화사들에게 위탁받아 무분별한 기준으로 일반 공중의 시민을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처벌하지 않고 단지 업로더들만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는 사이버 공간의 네티즌들에게 이러한 처벌이 올바른 인터넷 문화와 네티즌의 인터넷상 준법 정신에 대하여 비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이버 경찰이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으로 네티즌을 활용한 제도의 유지와 관리를 담당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³⁾

본 연구는 처벌에 있어 인터넷 공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들이 이러한 범죄를 하도록 방치하고 이후 범죄가 발생되면 처벌하려고 하는 사이버상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공유사이트를 규제하고 원천적인 규제의 루트를 설정하여야 하며 관리차원에서 사이버 범죄수사대와 협조를 얻어 정식화된 공유사이트 이외의 공유사이트는 더욱 강한 통제와 제제조치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처벌하지 않고 단지 업로더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며, 국가기관에서 운영되는 사이버 경찰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민간 기업이 업로더들을 적발, 합의하는 등 일련의 법집행 과정을 의도함으로써 일어나는 인터넷 문화의 정착에 대하여 알아보며, 사이버 경찰이 네티즌을 활용한 이러한 제도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의 영향과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을 토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파라치의 실태와 신문기사 그리고 네티즌들이 느끼는 시각에서 정보를 재구성하고 사이버 경찰의 제도와 역할상 이러한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지도 나타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2) <http://www.netan.go.kr/index.jsp>

3)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에는 이 제도에 대한 안티카페까지 생겼다. 또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는 경제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부모님이 아십니까?”, “고등학생인데 5만원도 큰돈이라 걱정” 등과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하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ISP로 통일한다.

본 연구는 총 5장 구성이며 인터넷과 관련한 정보가 다수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게시판이나 특성을 알 수 없는 게시물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네티즌이 느끼는 인터넷과 관련된 형법에 관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의 인지도는 설문하지 못하였다.

제1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현재 오프라인 상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2장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의 이해와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제3장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와 현재 이러한 처벌과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감독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경찰의 역할과 저작권 관련 영파라치 제도를 조명하고 이에 따라 신문, 인터넷 기사를 통한 네티즌의 게시물을 통해 문제점과 올바른 ISP의 관리 그리고 사이버 경찰을 통한 관리 감독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사이버 수사대의 협력방안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견해를 펼쳤다.

II.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저작권의 이해

1. 사이버 공간의 특성

사이버 공간에서 저작권침해의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정보매체로서의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살펴본다.

인터넷의 특성으로 다양한 요소를 지적할 수 있지만, 기존(offline)의 정보매체, 미디어매체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강동범, 2006: 36).⁴⁾ 첫째, 일방적 수동적 매체가 아닌 쌍방향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가능한 매체라는 점, 둘째, 정보의 유통과정을 통제하는 존재가 없이 탈중앙적이고, 개방적 매체라는 점, 셋째, 다수의 정보생산자가 존재하고, 정보수용자 역시 언제든지 능동적 정보생산자가 될 수 있는 이용자가 된다는 점, 넷째, 매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확대되어 있는 점, 다섯째, 다양한 정보전달방식의 구사(텍스트, 음성, 그래픽파일 등)가 가능한 점이다.

인터넷은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군사적 이용목적에 염두에 두고, 전면적인 핵공격이나 기타 광범위한 군사적 위기상황, 재난 등에 대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통신네트워크를 구상하는 과정의 산물로 등장한 것이다(권창국, 2006: 57). 이러한 발생배경을 보면 인터넷의 특성은 쉽게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⁵⁾

4) 정보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성을 ① Decentralized Control ② Anonymity, ③ Low Entry Barrier, ④ Wide Reach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5) 이외에도 공간적한계의 초월성, 전파의 신속성, 피해의 광범위성 및 막대한 피해, 익명성, 비대면성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디지털코드로 형성된 이진화된 매체는 그 특성상 복제가 쉽고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어려우며, 비가식적인 매체라는 이러한 특성이 매체를 복사·전달의 어려움을 없애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역기능적인 면을 가져 오기도 한다(김신희, 2010: 384).⁶⁾

2.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이해

1) 저작권의 개념

사전적 정의로 저작권 [著作權]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의 복제·번역·방송·상연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영어의 ‘copyright’를 한자로 옮긴 말이다.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저작권이 아니라 ‘복제권’ 또는 ‘복사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카피라이트(copyright)는 ‘카피할 권리(right to copy)’인 복제권을 의미했으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로 확대된 권리를 담고 있는 지적재산권⁷⁾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⁸⁾

저작권 제도는 1차적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 되어있다.

또한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창조 의욕과 그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창작자에게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6) 인터넷의 광범위성은 저작권매체의 홍보에 순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7) 지적재산권은 영어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를 번역한 것으로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으로도 불린다.

8) 저작권(copyright, 著作權)이란 소설·시·음악·미술 등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또한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성을 넓게 포괄하는데, 여기에는 소설·시·논문·강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작곡·영화·춤·그림·지도 등이 있다.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지 않는다.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공공의 재산이므로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저작자에게 생기는 여러 배타적 권리를 통틀어 일컫는다.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과 “재산권”(Economic Right)으로 나뉜다.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 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아우른다. 인격권은 만드는데게만 따르며 양도·상속할 수 없다.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가리킨다(다음백과,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XG366>, 검색일자, 2011.06.18).

저작권과 출판권은 혼동하면 안 된다. 저작권법은 저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를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또는 판권)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다(김규희, 2005: 8). 그러나 이러한 독점과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또 다른 창작물과 그 창작물을 창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조적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저작권법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2항에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물이 만들어질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 또는 등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저작권은 일련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 다수 권리의 집합이며 ‘권리의 다발(bumble of rights)’이라고 할 수 있다.

창작의 결과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4호까지 내용을 보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저작물 요건으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 범위 내 속해야 하고 창작성이 전제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originality)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이미 있는 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되는 표현형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맥에 따라 인터넷의 창조물도 포함 될 수 있으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창조물은 보호 받기 힘들다.

이에 따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로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는 뜻으로 저작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아이디어나 기획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표현된 저작물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즉, 다양한 표현 수단으로 구체화 되어야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이경우를 이른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⁹⁾이라고 한다. 아이디어의 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형식의 도용만이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한다(문화관광부, 2005: 26).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해 또는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김규희, 2005: 8-12).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은 저작자와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2) 사이버공간의 저작권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 저작물(Digital Works)이라는, 종래의 저작물과는 그 존재형식이 다른 새로운 저작물의 탄생을 가져왔다. 즉 다양한 정보¹⁰⁾가 디지털기술에 의해 0과 1의 이진코드로 변환되어 컴

9) 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10) 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퓨터 화면상에 나타나게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지털저작물에는 소설, 영화, 그림, 사진,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저작물 등이 있다(이기수·안효질, 1999: 30). 이러한 것들을 흔히 인터넷 콘텐츠라 한다(안상천, 1998: 4). 이와 같이 디지털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디지털로 구성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디지털 저작권은 컴퓨터프로그램상 위 저작물의 범위에 속하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전송 및 2차적 저작물 등에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김영철, 2000: 9-10).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실상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터넷은 지적 재산권의 이용·배포·전시에 대한 새로운 침해의 위험을 야기 시키고 있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지적재산권 이용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고 있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적재산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¹¹⁾ 전자상거래에서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 중의 하나는 지적재산권의 분야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배포·전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된 대상은 저작권·상표권·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이대화: 1999: 7).¹²⁾ 이들 중에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 저작권이다(현대호, 1999: 20).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디지털 저작물(Digital Works)이라는, 종래의 저작물과는 그 존재형식이 다른 새로운 저작물의 탄생을 가져왔다. 따라서 종래 저작권법의 복제·배포·출판·송신·수신의 개념, 공연권, 이용허가제도, 공정이용, 최초판매원칙, 해킹방지기술의 보호,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 디지털 도서관의 면책,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의 문제를 새로이 검토해 보아야 한다. 즉 복사기 출현 이후 저작권법 체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도전이 다가왔다(정진섭·황희철, 1995: 401-143). 이 사이버 공간은 기술의 발달로 원본을 카피한 복사본이 원본과 같이 반복과 재현이 가능하며 또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이러한 행위자가 다수여서 처벌의 어려움이 있다.

3. 저작권과 관련한 사이버 공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갈등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등호, 문자,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하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의 개념 속에는 저작물성을 갖는 정보, 저작물성이 없는 단순한 정보 등이 포괄되어 있다.

11) <http://www.keb.or.kr/sub-4/sub4-menu.html>.

12) 이외에도 유명인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승낙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권리와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나 웹사이트운영자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웹사이트나 사용자환경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서 보호하려는 시도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어문적인 요소(nonliteral aspects)에 대한 저작권자에 의한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미국의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하여 사용자환경 등을 보호할 중요성은 커진다.

인터넷은 개방된 네트워크(Network)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세계 어디든지 접근하여 콘텐츠 서비스(Contents Service)를 받을 수 있다(Benjamin Wright, 2000: 16-20). 이러한 접근성과 이용성의 낮은 비용 그리고 높은 PC의 보급률은 인터넷이라는 수단으로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한 갈등은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의 보호 사이의 고유 갈등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매개시켜주는 ISP 사이의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의 보호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게 거론 된다(김영철, 2000: 5).

인터넷은 오프라인의 현실과 다르게 사이버공간의 평등 즉 물질 만능주의를 탈피해 정보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를 외치며 초기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인터넷사업에 대기업의 진입과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아래 지적 재산권의 확대와 보호받을 저작물의 권리는 사이버공간의 이러한 공동체적 사회를 사실상 온라인을 이용한 오프라인에 한 수단으로 전략 시켜 버렸다. 인터넷 또한 대기업의 자본 아래 재상품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김영철, 2000: 1).

이에 따라 독점과 공유라는 지적 재산권의 문제로 발현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1996년 12월 체결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도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의 로비에 의해 일시적 램(RAM)에의 저장 이 복제에 해당하는지와 이들 사업자들의 저작권법상의 책임에 관한 논의가 유보되는 등으로 인해서 과도기적 조약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최재원, 1997: 222-225). 또한 디지털저작권 보호에 관한 선 발 각국의 노력들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할리우드 등 거대 문화사업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황희철, 1999: 322). 한편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직접 적발하여 고발하는 유형에서 사이버 공간의 광범위성과 익명성 그리고 ISP의 관계등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복잡한 관계가 직접 고발하는 방식을 탈피할 수밖에 없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신고유형이 변화가 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이러한 신고 제도는 국가에서 일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적발하여 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터넷의 자유로운 표현과 자유주의적 인터넷 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유형이 영파라치 제도이며 영파라치의 역기능적인 면이 이러한 갈등이 정보의 공유라는 갈등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를 양산하고 나아가 무분별한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일부네티즌에 범죄자라는 낙인화를 가져왔다.

III. 사이버공간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찰 감독 가능성

1. 관련 법규를 통한 고찰

한편 1997년과 1999년의 일본 저작권법의 개정, 1998년의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¹³⁾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99년 12월 저작권법을 개정 하였고 이후 2010년 2월 1일 일부 개정하였다. 정부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국제적인 논의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수용법을 마련하여 저작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WIPO조약에서 채택된 전송권 신설, 저작권관리정보, 동일성 유지권 신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보다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여 그 정도를 상향조정한 것 등이었다.

이에 2010년 2월 1일 개정을 살펴보기 전 1999년 12월 저작권법을 개정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통신 등이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함으로써 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전송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다(동법 제 2조 제 9호의 2 및 제 18조의 2).

둘째,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가 빈번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중용 복사기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후 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 27조 제 1항 단서 신설).

셋째,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서들의 저작물을 컴퓨터 등으로 복제하여 당해 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 28조 제 2항).

넷째,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저작자 등이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고 등록된 저작권 등을 고의 없이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동법 제 51조 제 1항 및 제 93조 제 4항).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된 데이터는 소진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 전송은 배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새로 삽입된 전송권의 적용을 받는다.

즉,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받은 사람은 권리 있는 사람이 만든 유체적인 고정물, 예컨대 프린터로 출력한 문서, 디스켓이나 시디롬 또는 이와 유사한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양도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으로 계속해서 전송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으로 계속해서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유체적인 고정물인 경우에는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계승균, 2003: 69).

오늘날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디지털기술 및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힘입어 저작물을 포함한 각종 정보가 시간적·공간적 한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되고, 또한 그 기능적 특징인 '쌍방향성'에 따라 정보의 편집·가공·변형이 매우 용이해져, 결국 기존의 법제도로는 저작권자의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저작권 법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적지 않다(김중태, 2005: 42).

13) 이하 DMCA라 약칭한다.

다음으로 2010년 2월 1일 개정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하고,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이 개정의 이유이다.¹⁴⁾

주요내용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법 제2조제5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법 제10조).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다(법 제14조).

또한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고(법 제1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20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법 제27조), 외국신문의 지사·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하고(법 제28조),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하였다(법 제29조·제33조 및 부칙 제4조). 마지막으로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법 제34조) 저작권법의 효율성을 증가 시켰다.¹⁵⁾

2. 경찰기관의 ISP의 통제 가능성

1) ISP의 관계와 ISP의 형사책임성

책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ISP에 직접적인 규제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ISP없이 업로더를 할 수 없는 유저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ISP에 대한 처벌에 관계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14)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C%A0%80%EC%9E%91%EA%B6%8C%EB%B2%95#liBgcolor15>, 검색일자, 2011.06.18)

15) 본 2010.02.01 개정사유와 개정문은 본 연구내용의 범위에 일부 벗어나지만 저작권을 연구하면서 저작권법의 취지를 설명하고자 부연 설명하였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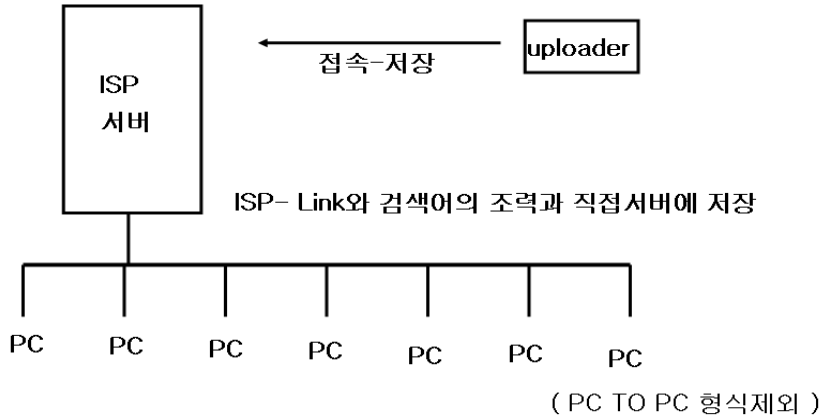
사이버 범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를 추적할만한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ISP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정완, 2006: 82).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관련 정보를 비롯한 사이버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법령의 직접위반자와 함께 게시판 관리자 또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도 최소한의 방조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그 자유규제를 초래하여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사책임과는 달리 형사책임을 경우에는 직접 위반의 고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완, 2006: 83).

책임성 면에서는 저작권과 더불어 불법 인권침해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ISP의 형사 책임은 불법정보에의 접속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책임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그 형사책임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ISP에게 보증인의 지위와 보증인의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보증인의 의무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의무라는 형태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일단 다른 서버에 저장된 불법정보를 매개해주는 ISP의 서비스에 대하여 그 정보에 대한 통제 가능성의 결여로 인하여 보증인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ISP의 보증인의 의무는 ISP가 자신의 서버에 불법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불법정보의 존재를 인식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증인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ISP가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포결과와 관련하여 부작위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즉, ISP가 최종적으로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ISP가 불법정보에 대한 기술적 차단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범공동체로부터 그러한 정보차단이 합리적으로 인정 될 수 있어야 한다(정완, 2006: 84). 이러한 정보 형법에서 경찰에서 제시하는 논리는 규제하는 업로더들은 ISP를 통하여 게시하고 정보를 유포시키는데 앞서 제시한 것처럼 ISP의 책임에 범위와 열거된 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저작권 관련한 ISP의 게시물의 경우 생산개발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게시물의 경우 이러한 저작물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와 링크된 리스트를 찾는 경우로 한정 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ISP가 직접적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책임의 가능성부분에서 직접 ISP의 서버에 저장해야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도 ISP와 유저들의 사이에 서버에 직접 저장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ISP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다.¹⁶⁾

16) 서버의 저장에 대한 수사 시 그 삭제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서버의 저장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의무적인 사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 ISP의 서비스 형태

※ 자료: ISP체계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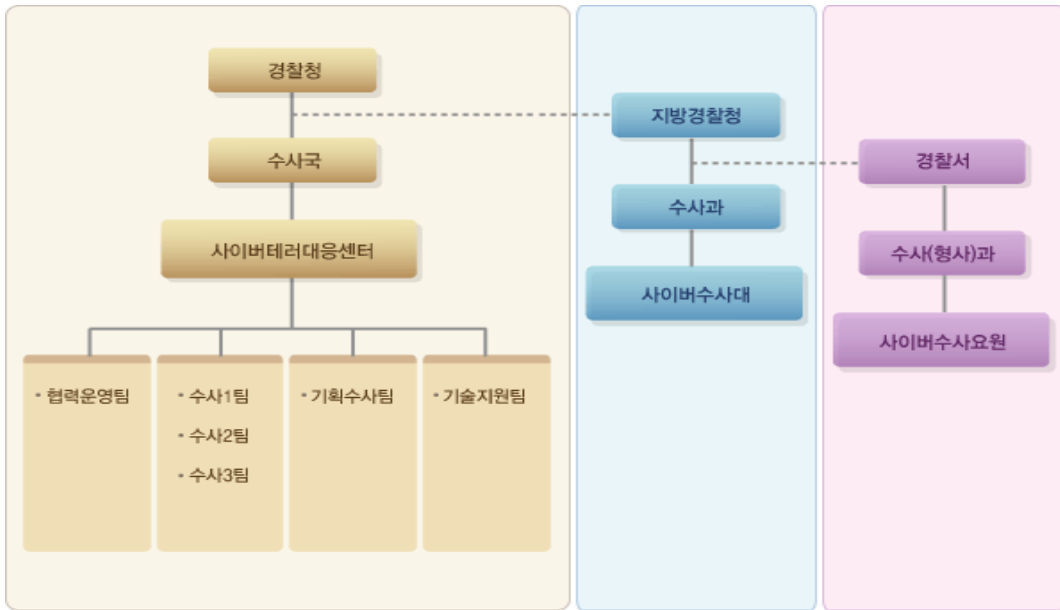
이에 따라 경찰기관은 ISP의 서버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가진 ISP는 게시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개방된 모니터링 조건아래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업로더들의 개인정보를 ISP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영장이 필요하지만 영장 없이도 이러한 업로더들의 아이디가 공개되어있음으로 인해 경고문등을 게재 하거나 E-Mail등을 보내어 업로더들이 스스로 저작물을 삭제 할 수 있게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영파라치 제도를 통한 올바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찰의 방안

1. 사이버 공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현제도

저작권에 관련한 법규는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제98조의1 (권리의 침해죄), 제140조 (고소)를 들 수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벌칙),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제30조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그리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에 의거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등이 적용을 받게 된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정보형법은 ISP의 게시물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음으로서 네티즌들에게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환경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인식 없이 업로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사이버 수사대의 조직도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직 내에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17) <http://www.netan.go.kr/index.jsp>



<그림 2> 사이버 경찰 조직도

※ 자료: 사이버 경찰청(<http://www.netan.go.kr/index.jsp>).

2. 시민의 참여를 통한 감독 방안

1) 저작권과 관련한 신고 제도 영파라치 제도의 도입 현황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라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 98조 제 3호, 제9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0조 제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시일이 오래 걸리며,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이에 따라 영상물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가 민간 기업체에서 시행되었다. 이하는 영파라치의 개념과 운용에 대한 내용이다.¹⁸⁾ 이러한 영파라치 제도를 보완 시행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방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를 막고 네티즌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며 보다 저작권을 보호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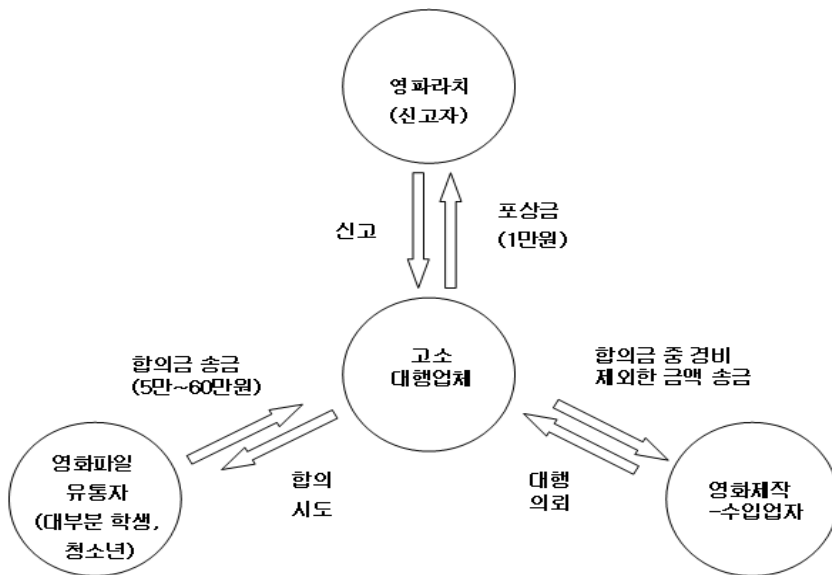
(1) 영파라치의 개념

18) 이 연구에서의 영파라치의 개념, 운영, 체계도는 현재 학문적으로 정의 된 것이 없고 인터넷 리서치를 통한 개념을 정립한 것이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한 개념과 뉴스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영파라치는 인터넷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네티즌이 서로 상호간에 적발할 수 있게 하는 개념으로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라 한다.¹⁹⁾ 이는 2006년 2월 1일 처음 시행되어 이후 2007년 2월 1일 1년간 27만 건의 접수건수를 넘겼다.²⁰⁾

(2) 영파라치 제도의 운영

영파라치는 ISP를 통하여 업로드 된 영화 및 콘텐츠를 다운받아 증거자료로 스크린 샷을 첨부하고 이를 신고업체에 신고하여 해당 업로더가 합의 및 벌금형 등 선고가 확정되면 신고자인 영파라치에게 포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영파라치 체계도

※자료: 기사내용을 토대로 재구성²¹⁾.

(3) 시행의 배경과 시민의 반응

영파라치는 영화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장려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이러한 파파라치 제도는 무분별한 기준과 정부가 주도 하지 않는다는 측면, 그리고 피해자의 양산이라는 문제와 빈부 격차 없는 인터넷의 정보공유라는 순기능적인 면을 저해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여론이 분분하다. 또한 업로더 기술에 미숙하여 조작 실수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며,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어있다.²²⁾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올바

19) 불법 복제한 영화파일을 웹하드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uploader·업로더)을 신고하면 영화계에서 영화 예매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준다. 이들을 신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20) <http://news.media.daum.net/entertain/movie/200702/01/ohmynews/v15581928.html>

21) 미디어다음. www.daum.net

른 네티즌 문화를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²³⁾ 이를 반영하듯 문화관광부에서 “과다한 손해배상금 요구 등에 대한 일반 네티즌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다수의 일반인들이 범법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 또한 예상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 실태이다.²⁴⁾

(4) 비판

신고자인 영파라치도 저작권 관련한 영상물 혹은 출판물 등 컴퓨터 입력 정보를 다운 받아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도 불법으로 저작권 관련한 영상물을 다운 받는 등의 범법행위로 신고하는 영파라치도 다운로드 과정에서 범피자가 된다. 수사기관인 사이버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파라치의 제도상 신고자도 법집행에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파라치의 제도의 순기능을 부각시키고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국가적 측면의 사이버경찰의 시민참여 누리꾼제도 활성화

(1) 누리캡스의 개념

‘누리캡스’란 네티즌을 뜻하는 누리꾼의 ‘누리’와 경찰을 뜻하는 ‘캡스(COPS)’의 합성어로 사이버 치안업무에 협력하는 사이버 명예경찰을 의미한다.

경찰청은 인터넷 모니터링 및 불법·유해 사이트 신고 등에 협력할 명예경찰 ‘누리캡스’를 지방청별로 선발하고 07년 4월 19일 11시 정각에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일제히 발대식을 가졌다. 누리캡스의 시행 배경은 인터넷의 콘텐츠 문화를 보호하자는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²⁵⁾ 영파라치와 같이 누리캡은 시민인 반면에 정부가 주체인 점에서 국가 공권력을 위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파라치제도와는 다르다. 이에 따라 시민의 반응도 영파라치 제도보다 유연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찰청은 누리캡스 전용 콘텐츠를 구축할 예정을 하고 있어 모니터링의 업데이트가 실시간 이루어져 피해자와 위법과 관련한 피의자를 검거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처벌 범위의 문제점과 적용범위의 명확화

22) “이들 피신고자의 90% 정도가 10~20대의 청소년과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업체 측이)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다.

23)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10/12/chosun/v1431167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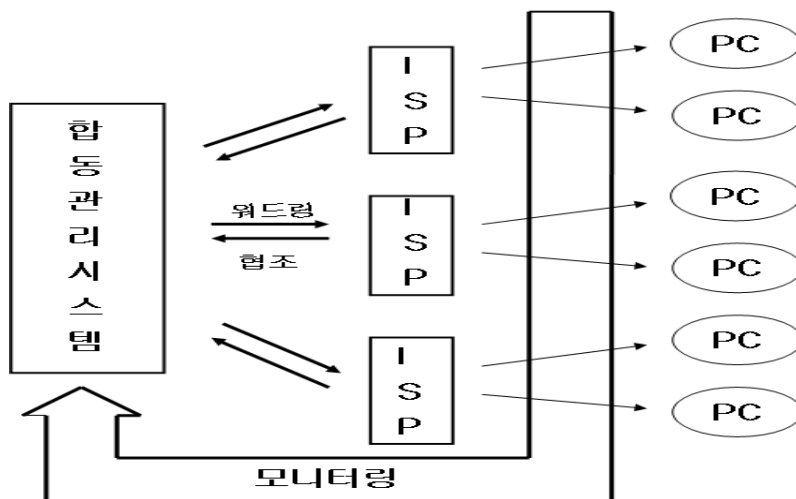
24) <http://news.media.daum.net/digital/computer/200608/30/etimesi/v13851384.html>

25) 최근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이 게시되고, 각종 카페·블로그·UCC등 콘텐츠를 통해 범죄 모의, 독극물 판매, 장기매매, 공·사문서 위조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인터넷이 각종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각종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네티즌, 시민단체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족한 것이다(<http://www.netan.go.kr/index.jsp>).

처벌을 한다면 ISP에 대해서만 처벌 할 것 인가 아니면 업로더만을 처벌할 것인가를 구분 짓는 것은 법의 기준이라 할 수 있겠다. 법적인 측면에서 ISP와 업로더의 처벌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많이 거론되었으나 링크의 불확실성, 게재물의 관리 감독의 가능성 등이 매우 애매한 적용범위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업로더들이 콘텐츠의 저작물을 변형, 일부의 삭제, 첨부하는 등의 업로드의 기술적인 발전양상은 정보형법의 적용범위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어 좀 더 분명하고 탄력적인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처벌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표현과 저작권의 보호라는 두 측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4. 제도적인 측면의 방안

사이버수사대가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방대하고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모두 감시하기란 어렵다. 현재 원천적인 검색기능에서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의 정식용어만을 입력하여 그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이버수사대가 이러한 검색어를 지정하고 그러한 검색기능을 원격으로 자동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하며 종합관리계를 구축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보완적인 체계구축 시스템 체계도

V. 결론

정보유통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은 자유로운 의사전달과 정보의 평등한 분배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수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상이 가져온 역기능적인 면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저작권의 또 다른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시점에서 불법유통에 올바른 근절을 위해 처벌의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하겠다. 이에 따라 업로더들과 사이버공간을 연결해주는 ISP의 책임여부도 고려되어야 하며 단지 책임가능성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영과라치와 같이 무분별한 책임의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인터넷의 자유적인 표현형식을 저해하고 인터넷의 본래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결과로 이어 질 것이다.

한국은 지금 인터넷의 문화 개방뿐 아니라 법적인 개방과 수용에 따른 한·미 FTA의 협상에 미국의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시안을 협정한 바 있다(한국경제, 2007). 그 지적 재산권의 내용은 영화관에서 캠코더 및 영상기기를 이용한 촬영을 한 경우나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는 등 협정 발효 6개월 내에 대학가의 불법복제등도 강화하는 내용을 체결하여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영역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가 신설 될 전망이다 더욱 그 법의 적용의 요건이 구체화 되고 탄력성 있는 시행으로 기존방식과는 다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규제가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처벌과 감독의 현실화에 있어서도 사이버 경찰만을 의지하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자를 직접 찾아가다니는 노력에서 단지 위탁하여 광범위한 저작권 위반자를 색출해 내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유통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사이버 경찰도 누리캡스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좀 더 그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이게 하여야 하겠다. 또한 제도의 도입초기여서 참여하는 시민이 많도록 홍보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범죄의 재현 가능성은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 처벌대상인 ISP을 처벌한다고 하여도 그 ISP의 기업은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치 않으며 또한 그 인터넷 체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기 때문에 복제사이트가 등장 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 된 것을 살펴보면 인터넷관련 처벌에 명확한 기준은 서있으나 대상에 애매함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결의 방식은 탄력적 이어야 하며, 정보 형법에서 대상자의 기준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애매함은 매개자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행위자만 처벌하는 결과로 귀속된 만큼 그 매개자 없이는 범죄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버 공간 특수성을 고려하고 매개자에 대한 통제를 해야지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원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원천적인 범죄 환경을 억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동범. 2006.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학회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35-54.
 계승균. 2003.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이론. 창작과 권리. 겨울: 69-106.
 김신희. 2010. 미국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 교육. 형사법의 신동향. 24: 382-401

- 권창국. 2006.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한계. 한국공안행정학회 추계학술세미나자료집. 57-73.
- 김규희. 2005. 신문사 뉴스저작물에 관한 기자들의 저작권 인식 연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철. 2000.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태. 2005. 인터넷상의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보학. 2001. 인터넷정보 유포와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 12(3): 5-46.
- 안상천. 1998.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네트워크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수 · 안효질. 1999. 인터넷과 저작권법. 계간저작권. 46: 29-41.
- 이대희. 1999. 도메인네임에 관한 쟁점 및 그 사례분석. 지식재산 21. 57: 2-30.
- 정 완. 2006.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진섭 · 황희철. 1995. 국제지적재산권법. 서울:육법사.
- 최재원. 1997.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 혁명: 디지털저작권 국제 협약의 변혁. 서울;마이크로소프트웨어.
- 현대호. 1999. 인터넷상 저작물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리와 그 전망. 지적재산 21: 55: 21-35.
- 황희철. 1996. 정보통신망 발전과 저작권. 한국 언론 연구원.
- Benjamin Wright · Jane K. Winn. 2000. *Law of Electronic Commerce*. New York: A Division of Aspen Publishers.
- 다음백과. <http://enc.daum.net/dic100/> 검색일자 2011.06.18.
- 미디어다음. <http://www.daum.net>. 검색일자 2011.06.18.
- 법제처 홈페이지 로엔비. <http://www.lawnb.com> 검색일자 2011.06.18.
- 사이버 경찰청 <http://www.netan.go.kr/index.jsp> 검색일자 2011.06.18.
- 한국경제. 2007. 5. 26. A7면.
- 한국전자거래표준원 <http://www.keb.or.kr>

李孝敏: 원광대학교에서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 경찰시험승진제도 개선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현재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찰인사관리, 경찰조직관리, 범죄예방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시험승진제도에 관한 경찰공무원 스트레스 차이에 관한 연구(2011), 경찰공권력실추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접근(2008), 다인종, 다문화 시대와 경찰활동의 모색(2007)" 등이 있다(policead98@ysu.ac.kr).

수 정 일: 2011년 07월 30일

게재확정일: 2011년 08월 08일

A Study on the Scope of ISP Punishments and about Proper Internet culture

– Cyber Copyright and Report System in Center –

Hyo Min Lee

A cyber space or society in the Internet has a strong influence on both online and offline life in this century. It is became a most powerful matter of the daily life. An expanding of the cyber space or society brings great convenient to our life in positive side, on the other hand an indiscreet sharing of the information or data causes several adverse effects and it lead to many of conflicts. The police are endeavouring to maintain peace and order, protect the properties, and keep clean. However, realistically keeping a close watch the massive illegal information is difficult. In this paper, investigates current environment or situation of the cyber space or society which neglect the situation as possible to commit a cyber-crime and punish it after it has been committed. This paper considers that in case of copyright related crime in cyber space. In a current system, only the individuals who upload or share illegal information are punished and the ISPs are free from it. Also it studies the situation that even government operated cyber police systems exist; private enterprise exposes the cyber-crime and leads agreements and possibility of cyber police manages the system using by netizen in cyber space.

Key words: internet service provider, cyber crime, movie-paparazzi, copy right